

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57-000019-14

의정활동보고서

제240회 임시회(2010. 6. 14 ~ 6. 21)



경상북도의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 2 지방선거를 원만하게 마치고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얻으신 여러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반면에 뜻을 이루지 못하신 의원님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고 견해를 달리하기도 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훌륭한 의견 제시로서 자치문화 정착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도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여 도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8대 의회도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청이전지 선정과 이전사업, 혁신도시건설, 낙동강살리기사업, 녹색

성장기반 구축,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 동남권신국제공항 유치 등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큰 과제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되돌아 보고 임기중의 값진 의정활동이 여러모로 빛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회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계서는 제8대 도의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相千

차 례

I. 개 황	4
II. 의사일정	5
III. 의안처리	12
IV. 민원처리	13
V. 본회의 보고사항	15
VI. 5분 자유발언	21
<input type="checkbox"/> 안순덕 의원(2차 본회의)	21
<input type="checkbox"/> 남종식 의원(2차 본회의)	23
<input type="checkbox"/> 김수용 의원(2차 본회의)	25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28
<input type="checkbox"/> 규칙안	150
<input type="checkbox"/> 동의안	163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는 2010년 6월 14일 11:00 개최하여 6월 21일 까지 8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22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14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남종식 의원, 김수용 의원)을 청취한 후 제2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하였다.

휴회기간인 6월 15일부터 6월 20일 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안전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40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한편, 이날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직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로비에서 이상천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 정용현 의정회장, 도내 기관장 및 경북도, 도교육청, 경찰청 간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경상북도의회 임기만료 행사를 개최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0-6호(2010년 6월 1일)

라. 집회일시 : 2010년 6월 14일(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0년 6월 14일 ~ 6월 21일(8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누계 97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특 위	
									예결	기타
239회 까지	813	45	128	118	116	107	107	118	57	17
240회	22	1	4	4	3	4	3	3		
누 계	835	46	132	122	119	111	110	121	57	17

※ 제8대 의회 누계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14(월)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input type="checkbox"/> 일반사항 보고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문화위원회 안순덕 의원(의성군) ○ 농수산위원회 남종식 의원(청송군)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수용 의원(영천시)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6.21(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21(월) 11:00 (제2차)	9.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10. 경상북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1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경상북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수정가결
	18.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9.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공원부지 및 상징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20. 경상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2.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3.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4.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14(월) 10: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15(화)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16~6.18 (3일간)	<input type="checkbox"/> 현지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개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14(월) 11: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4~6.16 (3일간)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 ○ 제주설문대 여성문화센터 ○ 제주의료원 및 제주종합사회복지관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현장 등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14(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 심사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17~6.18 (2일간)	<input type="checkbox"/> 현지견학 ○ 경남도청(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UNCCD) ○ 거제시(한려해상국립공원) ○ 창녕군(우포늪)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14(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6~6.18 (3일간)	<input type="checkbox"/> 현장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축산단지 및 관광농원 관리운영 실태 파악 ○ 선진 농축산 분야 비교 시찰을 통한 우수사례 수집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14(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공원부지 및 상징건축물 무상사용 연장 허가 동의안 ○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6.17~6.18 (2일간)	<input type="checkbox"/> 현지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마을 ○ 관광축제 등 문화 및 관광자원개발 현장 방문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p>6.14(월) 14:00 (제1차)</p>	<p><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6.17~6.18 (2일간)</p>	<p><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유치 사업장 및 시설물 ○ 명품도시 디자인 조성 현장 	

Ⅲ. 의안처리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25 (460)	25 (453)	21 (368)	4 (80)	0 (4)	0 (1)	0 (2)	0 (5)		
조 례 안	소 계	21 (288)	21 (283)	17 (222)	4 (57)	0 (3)	0 (1)	0 (1)	0 (4)	
	의회 제안	5 (76)	5 (74)	5 (61)	0 (13)				0 (2)	
	도지사 제출	14 (161)	14 (159)	11 (124)	3 (32)	0 (2)	0 (1)	0 (1)	0 (1)	
	교육감 제출	2 (51)	2 (50)	1 (37)	1 (12)	0 (1)			0 (1)	
규 칙 안	2 (6)	2 (6)	2 (5)	0 (1)						
예산·결산	0 (34)	0 (34)	0 (14)	0 (20)						
동의·승인	1 (38)	1 (37)	1 (36)	0 (1)				0 (1)		
건의안	0 (8)	0 (7)	0 (7)				0 (1)			
결의안	0 (20)	0 (20)	0 (18)	0 (1)	0 (1)					
기 타 안	1 (61)	1 (61)	1 (61)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5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07.3.14 상정 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07.6.12 심사 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07.11.5 상정 유보)
- 경상북도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환경위원회 '09.2.12 심사 유보)
-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10.3.26 심사 유보)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업	기 타
계	2 (109)	(7)	(12)	(6)	1 (48)	(4)	1 (3)	(7)	(7)	(15)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1 (17)			(5)	(3)		1 (2)			(7)
행 정 보건복지	(14)	(6)	(5)							(3)
교 육 환 경	(9)					(4)		(5)		
농수산	(9)							(1)	(7)	(1)
통 상 문 화	(10)		(7)	(1)			(1)	(1)		
건 설 소 방	1 (44)				1 (43)					(1)
특 별 위원회	(3)				(2)					(1)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109)	2 (109)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1 (17)	1 (17)				
행 정 보건복지	(14)	(14)				
교육환경	(9)	(9)				
농 수 산	(9)	(9)				
통상문화	(10)	(10)				
건설소방	1 (44)	1 (44)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9건(조례안 18, 동의안 1)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기획경제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6. 7)
경상북도교육감 (2010. 5.2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10. 6. 7)
경상북도교육감 (2010. 5.2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 수 산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 수 산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상문화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통상문화 (2010. 6. 7)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상문화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문화엑스포 공원부지 및 상징 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통상문화 (2010. 6. 7)
고우현의원외 9인 (2010. 6. 4)	경상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0. 6. 7)
장두욱의원외 9인 (2010. 6. 4)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0. 6. 7)
경상북도지사 (2010. 6. 4)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0. 6. 7)

2. 조례공포 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0.03.2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3.30 (제3165호)
2010.03.31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66호)
2010.03.31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67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68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69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70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71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4.19 (제3172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73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74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75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76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	2010.04.19 (제3177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78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2010.04.19 (제3179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80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81호)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4.19 (제3182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0.03.3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2010.04.19 (제3183호)
2010.04.0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2010.04.29 (제3184호)

3. 의원신분 변동사항

소속상임위	성 명	변동사항 (변동일)	사 퇴 사유	비 고
통상문화	최 윤 희	의원직 사퇴 ('10. 5.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4. 의원동정

□ 제 8대 도의원 “6. 2 전국지방동시선거” 결과

합 계		시장군수		도 의 원		비 고
출 마	당 선	출 마	당 선	출 마	당 선	
39	24	6	2	33	22	비출마 : 15명

※ 봉화군수 : 박노욱(농수산), 예천군수 : 이현준(건설소방)

□ 채옥주 의원, 한국걸스카우트 최고영예 “금장”과 공로패 수상

- 일 시 : 2010. 6. 9(수), 11 : 00
- 장 소 : 서울 한국걸스카우트연맹회관
- 수상사유 : 33년간 한국걸스카우트 활동과 발전에 기여

※ 현) 한국걸스카우트 수석부총재

5.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쌀자장면 먹는날(블랙데이) 시식행사
 - 일 시 : 2010. 4. 14(수), 12:00
 - 장 소 : 도청 구내식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3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 일 시 : 2010. 4. 20(화), 11:00
 - 장 소 : 안동 탈춤공연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천안함 침몰 장병 합동분향
 - 일 시 : 2010. 4. 26(월), 11:00
 - 장 소 : 도청 분향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지식경제부지정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기공식
 - 일 시 : 2010. 5. 4(화), 15:30
 - 장 소 : 영남대학교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신축현장
 - 참 석 : 황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회의
 - 일 시 : 2010. 5. 7(금), 12:00
 - 장 소 : 대전 리베라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지방선거 당선자 당선증 교부식

- 일 시 : 2010. 6. 4(금), 14:00
- 장 소 : 도 선관위 회의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55회 현충일 추념식

- 일 시 : 2010. 6. 6(일), 10:0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2010년도 경주임란의사 추모행사

- 일 시 : 2010. 6. 9(수), 11:00
- 장 소 : 경주 임란충의공원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제12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대회』

- 일 시 : 2010. 6. 10(목), 11:00
- 장 소 :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공원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VI. 5분 자유발언

□ 2010년 6월 14일(월) 제24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안순덕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의성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안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8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 제5대 도의회에 들어와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한 16년의 시간 머리숙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사회위원장, 운영위원장, 예산결산검사위원장, 부의장, 국제친선 의원연맹 회장으로 동료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8대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 내고장 의성과 관련된 사안 몇 가지에 건의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도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농촌 지역 노인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는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의 재조정과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 경북도 토종어종산업화센터는 농민들의 농외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능을 확대 추진을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내 관광지개발 및 기타 개발계획에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령친화모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 집행부의 지도·감독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성군 자체사업 중 생태목장공원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의 독립을 저해하는 각 정당의 편의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으로 9대 의회에서 다시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실 의원님과 함께 못하는 동료의원님 모두 경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년 4월 14일(월) 제24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남종식 의원(농수산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6월 2일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꿈꾸는 자는 이룬다’는 구호를 외쳤지만 본인의 부덕함으로 인해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함께 수고하고 애를 쓴 모든 후보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들에게 표심을 얻어 당선되신 모든 당선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지난 4년 동안을 회상하고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4년 동안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4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고, 그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4년 동안 희망의 경상북도와 농업, 농촌, 농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졌습시다만,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영우 교육감님 뜻을 합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 경북이 지향하는 바를 꼭 이루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활동한 경북은 농도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농업이, 농촌이, 농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많이 요구도 했고, 또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김관용 도지사님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농업, 농촌, 농민이 잘 살지 않고는 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식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민선5기 시대를 맞이해서 꼭 우리 농촌이,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이영우 교육감님 이제 새로운 교육의 수장으로 다시 한번

더 재선이 되셨는데 정말 모든 교육감님들이 학교 무료급식을 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교 무료급식을 통해서 농업, 농촌, 농민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에 거론되었던 것 빠른 시일 내에 특히 농촌에 있는 학교만이라도 빨리 무료급식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이 가꾸어 놓은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먹여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9대 의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선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경북이 지향하는 잘사는 경북, 희망의 경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농업선진국이 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모든 나라들이 농업선진화를 통해서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만이라도 농업을 무시하지 않고 농촌을 업신여기지 않고 농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아공 월드컵을 통해서 그리스전의 투혼과 승전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월드컵의 열기와 투혼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이 함께 외쳐져서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일류 국가 건설과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성공시대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는 이제 4년간의 군의원 시절과 4년간의 도의원 시절을 합산해서 이제 농민들에게 돌아가서 희망의 경북을 만들 수 있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9대 의회에 입성하실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자 모두가 힘을 합해서 희망의 경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 6월 14일(월) 제24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수용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영천출신 행정정보복지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귀상어고기, 일명 돔베기 11건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기준치 1ppm을 초과한 메틸 수은이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모 방송에서는 영천지역 주민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전국평균보다 7배 높게 나온 것은 영남지방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리는 돔베기가 원인이라는 환경부의 용역에 의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지역 특히 군위, 영천지역 사람들이 돔베기를 먹기 때문에 수은 축적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나친 추정이라 할 것입니다.

제사 때나 명절에 조금 먹는 정도이지 평소 상시적으로 밥상에 돔베기를 반찬으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섭취량도 연 240g 정도에 지나지 않아 미국 FDA의 어패류 권장량인 1주 170g에 비해 매우 소량이므로 상어 고기를 수은 축적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있는 돔베기는 이미 식약청에서 부산세관을 통관할 때 수은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천 전통 시장에 유통되는 돔베기는 90%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청상아리로 일차 통관 될 때 수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 수은 농도 과다문제에 돔베기가 지목됨에 따라 영천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꼽히는 돔베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 오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영천시는 지난해 한방 돔베기의 제조법 확립과 시제품제작을 목적으로 총 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대구카톨릭대학교 해양바이오 산업연구

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영천 돛베기의 명품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수은 돛베기 문제가 불거져 관계자는 물론 지역민들 모두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선부른 발표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영천 돛베기 시장 전체가 이미 치명상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내 혈중 수은 농도와 제수용 돛베기 섭취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정밀조사 시 조사대상 연령대를 다양화하는 등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며, 조사 시 환경부가 주관하되 농식품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참여 시켜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시하여 영천 돛베기에 대한 일체의 오해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상북도 또한 영천 지역경제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이 영천 돛베기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동참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천의 문제만이 아닌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경상북도가 나 몰라라 뒤짐만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동안 영천의 돛베기는 특산물로서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 사례 또한 크나큰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은 물론 정밀연구조사 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론을 제시하고 빠른 시일내 영천 돛베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8대의회에서 경북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아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21건
- 규칙안 : 2건
- 동의안 : 1건

□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
2. 기획경제위원회 12명 이내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2명 이내
4. 문화환경위원회 12명 이내
5. 농수산위원회 12명 이내
6. 건설소방위원회 12명 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

가.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 투자통상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가.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문화환경위원회

가.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농수산위원회

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건설소방위원회

가. 도청이전추진단,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중 교육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의원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제6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 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u> 2. <u>기획경제위원회 10명 이내</u> 3. <u>행정보건복지위원회 10명 이내</u> 4. <u>교육환경위원회 10명 이내</u> 5. <u>농수산위원회 10명 이내</u> 6. <u>통상문화위원회 10명 이내</u> 7. <u>건설소방위원회 10명 이내</u>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회운영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의회운영에 관한 사항</u> 나. <u>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u> 다. <u>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u> 2. <u>기획경제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u> 3. <u>행정보건복지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속하는 사항</u>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u> 2. <u>기획경제위원회 12명 이내</u> 3. <u>행정보건복지위원회 12명 이내</u> 4. <u>문화환경위원회 12명 이내</u> 5. <u>농수산위원회 12명 이내</u> 6. <u>건설소방위원회 12명 이내</u> 7. <u>교육위원회 9명</u>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회운영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의회운영에 관한 사항</u> 나. <u>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u> 다. <u>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u> 2. <u>기획경제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 투자통상국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3. <u>행정보건복지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호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
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범위) (생략)</p> <p>1. ~ 3.(생략)</p> <p>4. <u>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u>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p> <p>5.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u>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 (교육장)</p> <p>6.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u>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p> <p>7. ~ 8.(생략)</p>	<p>제2조(범위)(현행과 같음)</p> <p>1. ~ 3.(현행과 같음)</p> <p>4. <u>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u></p> <p>5.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u>...</p> <p>6.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u>...</p> <p>7. ~ 8.(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경상북도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금의 교부)경상북도는 의정 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4조(보조금의 교부)경상북도는 의정 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18호를 제21호로 하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도정 정보화사업의 추진
19. 지역정보화 시책의 개발 및 대민 정보서비스 제공
20. 행정전산망 및 통신시설 운영

제7조 중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제26호를 제28호로 하고,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산림테라피, 레포츠, 휴양관광기반 조성
27. 특화 산림자원 명품브랜드화 등 신 산림소득사업 육성

제13조 중 제33호부터 제45까지를 각각 제34호부터 제46호까지로 하고,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6호(종전의 제45호) 중 “민방위”를 “민방위·비상대비”로 한다.

33.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비상대비분야”는 건설도시방재국으로, 경제과학진흥국의 “정보통신분야”는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획조정실) (생략)</p> <p>1~5. (생략)</p> <p>6. <u>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u></p> <p>7~17.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18. (생략)</p>	<p>제6조(기획조정실)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7~17. (현행과 같음)</p> <p>18. <u>도정 정보화사업의 추진</u></p> <p>19. <u>지역정보화 시책의 개발 및 대민 정보 서비스 제공</u></p> <p>20. <u>행정전산망 및 통신시설 운영</u></p> <p>21. (현행 제18호와 같음)</p>
<p>제7조(경제과학진흥국) (생략)</p> <p>1~26. (생략)</p> <p>27. <u>도정 정보화사업의 추진</u></p> <p>28. <u>지역정보화 시책의 개발 및 대민 정보 서비스 제공</u></p> <p>29. <u>행정전산망 및 통신시설 운영</u></p> <p>30. (생략)</p>	<p>제7조(경제과학진흥국) (현행과 같음)</p> <p>1~26.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30. (현행과 같음)</p>
<p>제11조(환경해양산림국) (생략)</p> <p>1~2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26. (생략)</p>	<p>제11조(환경해양산림국) (생략)</p> <p>1~25. (생략)</p> <p>26. <u>산림테라피, 레포츠, 휴양관광기반 조성</u></p> <p>27. <u>특화 산림자원 명품브랜드화 등 신 산림 소득사업 육성</u></p> <p>28. (현행 제26호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건설도시방재국) (생략) 1~3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33~44.</u> (생략) <u>45.</u> 기타 건설·지역개발·민방위·방재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p>	<p>제13조(건설도시방재국) (생략) 1~32. (생략) <u>33.</u>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u>34~45.</u> (현행 제33호부터 제44호까지와 같음) <u>46.</u><u>민방위·비상대비</u>···</p>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비율	14%이내	20%이내	33%이내	25%이내	8%이상

별표3 중 일반직 소계란 “1,380”을 “1,381”로, 일반직 5급이하란 “1,296”을 “1,297”로, 별정직 소계란 “42”를 “41”로, 별정직 5급상당 이하란 “37”을 “3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604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896명</u> 2~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97명</u></p> <p>[별표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p> <p>4.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9급</td> </tr> <tr> <td>비율</td> <td>14%이내</td> <td>21%이내</td> <td>36%이내</td> <td>21%이내</td> <td>8%이상</td> </tr> </table> <p>[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2">기관별</th> <th rowspan="2">합계</th> <th rowspan="2">본청</th> <th rowspan="2">의회</th> <th rowspan="2">직속 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r> <tr> <th>합계</th> <th>본청</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일 반 직</td> <td>소 계</td> <td>1,38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별 정 직</td> <td>5급이하</td> <td>1,29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 계</td> <td>4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율	14%이내	21%이내	36%이내	21%이내	8%이상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계	본청	·								일 반 직	소 계	1,380	-					·							·							별 정 직	5급이하	1,296	-					소 계	42						·							·								·								·								·								·								·								·								·								<p>제2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p> <p>1. …………… : <u>1,899명</u> 2~3. (현행과 같음) 4. …………… : <u>94명</u></p> <p>[별표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p> <p>4.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9급</td> </tr> <tr> <td>비율</td> <td>14%이내</td> <td>20%이내</td> <td>33%이내</td> <td>25%이내</td> <td>8%이상</td> </tr> </table> <p>[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2">기관별</th> <th rowspan="2">합계</th> <th rowspan="2">본청</th> <th rowspan="2">의회</th> <th rowspan="2">직속 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r> <tr> <th>합계</th> <th>본청</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일 반 직</td> <td>소 계</td> <td>1,38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별 정 직</td> <td>5급이하</td> <td>1,29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 계</td> <td>4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율	14%이내	20%이내	33%이내	25%이내	8%이상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계	본청	·								일 반 직	소 계	1,381	-					·							·							별 정 직	5급이하	1,297	-					소 계	41						·							·								·								·								·								·								·								·								<p>제2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p> <p>[별표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p> <p>4. 별정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9급</td> </tr> <tr> <td>비율</td> <td>(개정안과 같음)</td> <td>(개정안과 같음)</td> <td>(개정안과 같음)</td> <td>(개정안과 같음)</td> <td>(개정안과 같음)</td> </tr> </table> <p>[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2">기관별</th> <th rowspan="2">합계</th> <th rowspan="2">본청</th> <th rowspan="2">의회</th> <th rowspan="2">직속 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r> <tr> <th>합계</th> <th>본청</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일 반 직</td> <td>소 계</td> <td>(개정안과 같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별 정 직</td> <td>5급이하</td> <td>(개정안과 같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 계</td> <td>(개정안과 같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율	(개정안과 같음)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계	본청	·								일 반 직	소 계	(개정안과 같음)	-					·							·							별 정 직	5급이하	(개정안과 같음)	-					소 계	(개정안과 같음)						·							·								·								·								·								·								·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율	14%이내	21%이내	36%이내	21%이내	8%이상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계	본청																																																																																																																																																																																																																																																																																																																																																																																																						
·																																																																																																																																																																																																																																																																																																																																																																																																								
일 반 직	소 계	1,380	-																																																																																																																																																																																																																																																																																																																																																																																																					
	·																																																																																																																																																																																																																																																																																																																																																																																																							
	·																																																																																																																																																																																																																																																																																																																																																																																																							
별 정 직	5급이하	1,296	-																																																																																																																																																																																																																																																																																																																																																																																																					
	소 계	42																																																																																																																																																																																																																																																																																																																																																																																																						
	·																																																																																																																																																																																																																																																																																																																																																																																																							
·																																																																																																																																																																																																																																																																																																																																																																																																								
·																																																																																																																																																																																																																																																																																																																																																																																																								
·																																																																																																																																																																																																																																																																																																																																																																																																								
·																																																																																																																																																																																																																																																																																																																																																																																																								
·																																																																																																																																																																																																																																																																																																																																																																																																								
·																																																																																																																																																																																																																																																																																																																																																																																																								
·																																																																																																																																																																																																																																																																																																																																																																																																								
·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율	14%이내	20%이내	33%이내	25%이내	8%이상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계	본청																																																																																																																																																																																																																																																																																																																																																																																																						
·																																																																																																																																																																																																																																																																																																																																																																																																								
일 반 직	소 계	1,381	-																																																																																																																																																																																																																																																																																																																																																																																																					
	·																																																																																																																																																																																																																																																																																																																																																																																																							
	·																																																																																																																																																																																																																																																																																																																																																																																																							
별 정 직	5급이하	1,297	-																																																																																																																																																																																																																																																																																																																																																																																																					
	소 계	41																																																																																																																																																																																																																																																																																																																																																																																																						
	·																																																																																																																																																																																																																																																																																																																																																																																																							
·																																																																																																																																																																																																																																																																																																																																																																																																								
·																																																																																																																																																																																																																																																																																																																																																																																																								
·																																																																																																																																																																																																																																																																																																																																																																																																								
·																																																																																																																																																																																																																																																																																																																																																																																																								
·																																																																																																																																																																																																																																																																																																																																																																																																								
·																																																																																																																																																																																																																																																																																																																																																																																																								
·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율	(개정안과 같음)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계	본청																																																																																																																																																																																																																																																																																																																																																																																																						
·																																																																																																																																																																																																																																																																																																																																																																																																								
일 반 직	소 계	(개정안과 같음)	-																																																																																																																																																																																																																																																																																																																																																																																																					
	·																																																																																																																																																																																																																																																																																																																																																																																																							
	·																																																																																																																																																																																																																																																																																																																																																																																																							
별 정 직	5급이하	(개정안과 같음)	-																																																																																																																																																																																																																																																																																																																																																																																																					
	소 계	(개정안과 같음)																																																																																																																																																																																																																																																																																																																																																																																																						
	·																																																																																																																																																																																																																																																																																																																																																																																																							
·																																																																																																																																																																																																																																																																																																																																																																																																								
·																																																																																																																																																																																																																																																																																																																																																																																																								
·																																																																																																																																																																																																																																																																																																																																																																																																								
·																																																																																																																																																																																																																																																																																																																																																																																																								
·																																																																																																																																																																																																																																																																																																																																																																																																								
·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u>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u>로 정한다.</p>	<p>제5조(직원의 정원)<u>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 </p>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북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도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도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도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도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도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7. 도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 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도지사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도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시·군과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녹색성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녹색성장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방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지방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지방추진계획 소관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경상북도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제4항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지방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 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10조제9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녹색성장책임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3.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관련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6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도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도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도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 각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연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도지사는 도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0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 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1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 세대 및 미래 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도,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도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2조(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도지사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도지사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10조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는 2010. 12. 2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상북도 행정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안인 경우 도민 및 도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이 제안에 응모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공감정책 도민제안의 발굴 등) ①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도정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도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도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도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도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중 “본부·국장”을 “실·과·팀장”으로, “팀·과장 및 담당
사무관”을 “사무관 및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및 입선”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입선 :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7조제1항관련)

창안등급	인사특전의 종류	인사특전 대상자
금상 · 은상 · 동상	특별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 기능직지방공무원 • 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승진 우선권 부여	• 5~6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
	특별승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 소방경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자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장려상 · 노력상	특별승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직지방공무원 •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 <p>※ 다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p>
입 선	실적가점 부여	

- 비 고 1. 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으로 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승진우선권 부여”란 공무원이 제안하여 창안등급이 동상이상 채택된 경우 그 제안 공무원이 승진배수 범위내에 속하는 때에 우선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제안의 제출) ①(생략) 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조(제안의 제출)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경상북도 행정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안인 경우 도민 및 도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이 제안에 응모할 수 있다.</p> <p>제7조의 2(생활공감정책 도민제안의 발굴 등) ①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도정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도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도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도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도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생략) ②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u>본부·국장으로</u> 하고, 위원은 <u>팀·과장 및 담당 사무관</u>으로 한다</p>	<p>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 <u>실·과·팀장</u>----- <u>사무관 및 담당 주무관</u>-----</p>
<p>제16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찬안 등급은 <u>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u>으로 구분한다</p>	<p>제16조(제안의 등급) ①----- ----- <u>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및 입선</u>-----</p>
<p>제19조(부상금의 지급)①(생략) 1~5(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9조(부상금의 지급)①(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u>6.입선 :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u></p>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a-b/a)한 비율, 이하 이 조에서 “분양가격 인하율”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62.5를 경감한다.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동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

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부터 최초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 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당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p> <p>①~③ (생략)</p> <p>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p> <p><신설'08.7.17, 개정'09.4.23></p>	<p>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 현행조례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적용시한이 2010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p> <p>○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p>

<p>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신설'08.7.17></p> <p>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신설'08.7.17></p> <p>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 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p> <p><신설'09.4.23></p> <p>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p>	<p>⑤ (현행과 같음)</p>	
---	-------------------	--

<p>75를 경감한다. <신설'09.4.23>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신설'09.4.23></p>	<p>제14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 현행조례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적용시한이 2010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p>
--	---	---

<신설>

	<p>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p> <p>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p> <p>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a-b/a)한 비율, 이하 이 조에서 “분양가격 인하율”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p> <p>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62.5를 경감한다.</p> <p>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20퍼</p>	
--	---	--

	<p>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동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부터 최초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 신탁, 대물변제를 통해 매입하는 구매자도 최초의 취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포함</p>
--	---	--

	<p>1.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 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p> <p>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 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당해 미 분양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p>	
--	--	--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4조제4항·제5조제1항·제12조제1항·제15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각 “각 호의”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조제2호가목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풍부한 증”을 “풍부한 자 증”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도록 하며,”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우수농산물은 도지사가 지정한다.”를 “우수농산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u>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u>각호의 1과 같다.</u></p> <p>1. (생략)</p> <p>가. 해당 생산품목이 「<u>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u>」 제12조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 되어 추천을 받은 자나.~다. (생략)</p> <p>2. (생략)</p> <p>가. 경상북도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자가시설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u>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u>」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p>	<p><u>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3조(상표사용신청자격)----- ----- ---<u>각 호의</u>-----.</p> <p>1. (현행과 같음)</p> <p>가. ----- 「<u>농산물품질관리법</u>」 제5조----- ----- ----- -----</p> <p>나.~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 「<u>식품산업진흥법</u>」 제22조--- ----- ----- -----</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4조(위원회 설치) ①~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u>풍부한 중</u>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심의한다.</p> <p>제9조(지정 신청)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지정 신청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u>현장조사</u>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검사 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10조(지정 및 사용) ①<u>우수 농산물은</u>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품목과 생산자를 기재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4조(위원회 설치)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u>각 호의</u>----- ----- ----- ----- <u>풍부한 자 중</u>----- -----.</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u>각 호의</u>-----.</p> <p>제9조(지정 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 -----<u>현 장 조사</u> <u>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u>--- ----- ----- -----.</p> <p>제10조(지정 및 사용) ①<u>우수 농산물은</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p>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제12조(상표의 사용중지) 상표 사용자는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p> <p>제15조(지정 취소) ①다음 <u>각호의</u>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12조(상표의 사용중지)--- -----<u>각 호의</u>----- ----- -----.</p> <p>15조(지정 취소) ①--<u>각 호의</u> ----- ----- -----.</p>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력추적관리
농산물·지리적표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사.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제6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 (생략)</p> <p>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 농산물</p> <p>나.(생략)</p> <p>다.(생략)</p> <p>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p> <p>마.(생략)</p> <p>바.(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정의)이 조례에…………… 다음과 같다.</p> <p>3. (현행과 같음)</p> <p>가. 「<u>농산물품질관리법</u>」에 의한 <u>우수 관리인증농산물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지리적표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u></p> <p>나.(현행과 같음)</p> <p>다.(현행과 같음)</p> <p>라. 「<u>식품산업진흥법</u>」에 의해 <u>품질 인증을 받은 전통식품</u></p> <p>마.(현행과 같음)</p> <p>바.(현행과 같음)</p> <p>사. 「<u>식품위생법</u>」에 의해 <u>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u></p>

현행	개정안
<p>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④(생략)</p> <p>⑤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④(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6조의2(심의위원회 운영) ① <u>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u> 2. <u>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3. <u>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u> <p>②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③ <u>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상대상) 문화상은 추천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1.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
2. 경북도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3. 타 시·도 거주자라도 경상북도 문화발전에 기여한 자

제8조(시상) 제1항 중 “상장 및 부상”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제2조(수상대상)문화상은 경상북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p>	<p>제2조(수상대상)문화상은 추천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년 이상 경상북도내에 거주한 자 2. 경북 도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3. 타시도 거주자라도 경상북도 문화발전에 기여한 자 	수상대상자 기준 구체화
<p>제8조(시상)①수상자에게 <u>상장</u> 및 <u>부상</u>을 수여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부상</u>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p>	<p>제8조(시상)①수상자에게 <u>상장을</u> 수여한다.</p> <p>〈삭 제〉</p>	부상 수여 항목 삭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4.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연구소·단체·대학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업 등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집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영상제·전본시장 참여 및 국내유치, 수출관련 협력체제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3.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그 밖의 중요사항의 자문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③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연구소, 관련업계 대표 등
3. 기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도의 업무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p><u>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p> <p>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 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 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u>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p> <p>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 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 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를 “경상북도경제진
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지원
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12호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10호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이라 한다.

②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u>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u>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인격 및 명칭) <u>지원센터</u>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u>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u>"라 한다.</p> <p>제3조(사무소) ①<u>지원센터</u>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둔다. ②<u>지원센터</u>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p> <p>제4조(정관) ①<u>지원센터</u>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1.(생략) 12. 기타 <u>지원센터</u>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p> <p>② <u>지원센터</u>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사업) ①<u>지원센터</u>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9.(생략)</p>	<p>제명 : <u>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 ----- ----- <u>경상북도경제진흥원</u>을 ----- ----- .</p> <p>제2조(법인격 및 명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 ---- "<u>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u>"이라 ---- .</p> <p>제3조(사무소) ①<u>진흥원</u> ----- ----- . ②<u>진흥원</u>은 ----- ----- .</p> <p>제4조(정관) ①<u>진흥원</u> ----- ----- . 1.~11.(현행과 같음) 12. ---- <u>진흥원</u> ----- -----</p> <p>② <u>진흥원</u>이 ----- ----- ----- ----- .</p> <p>제5조(사업) ①<u>진흥원</u>은 ----- ----- . 1.~9.(생략)</p>

현 행	개 정 안
<p>10. 기타 <u>지원센터</u>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p> <p>② <u>지원센터</u>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p> <p>제6조(임원) <u>지원센터</u>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7조(재산출연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지원센터</u>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p> <p>제8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위탁)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u>지원센터</u>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9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u>지원센터</u>에 위탁할 수 있다. ② <u>지원센터</u>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지원센터</u>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0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u>지원센터</u>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10. ----- <u>진흥원</u> ----- ----- .</p> <p>② <u>진흥원</u>은 ----- ----- ----- .</p> <p>제6조(임원) <u>진흥원</u> ----- ----- ----- .</p> <p>제7조(재산출연등) ----- ----- <u>진흥원</u> ----- ----- .</p> <p>제8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위탁) ----- ----- ----- ----- <u>진흥원</u> ----- ----- .</p> <p>제9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 ----- ----- <u>진흥원</u> ----- . ② <u>진흥원</u>은 ----- ----- ----- ----- <u>진흥원</u> ----- ----- .</p> <p>제10조(업무의 위탁) ① ----- ----- ----- <u>진흥원</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회계년도) <u>지원센터</u>의 회계년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p>	<p>제11조(회계년도) <u>진홍원</u> ----- ----- .</p>
<p>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u>지원센터</u>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 <u>진홍원</u> ----- ----- ----- ----- .</p>
<p>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u>지원센터</u>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 ----- ----- <u>진홍원이</u> ----- ----- ----- .</p>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6. “입찰안내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7. “발주청”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원안채택”이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9. “조건부채택”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심의”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1. “설계적격”이란 위원회에서 일괄입찰에 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하며, 대안입찰에 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2. “설계부적격”이란 위원회에서 일괄입찰에 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하며(다만, 제1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대안입찰에 대하여는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3. “대안채택”이란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4. “대안불채택”이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 등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도 및 관할 시·군 소속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6.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9.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0.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다. 민간투자사업(「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으로 추진하는 공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 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 등의 일괄·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9.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그 밖에 총공사비가 심의대상 미만의 공사 중 발주청장이 요청하거나, 특수공법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사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보궐위촉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도 본청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하며,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신청) ① 발주청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검토)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신청서를 부의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가는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안설명) 심의를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발주청장”이라 한다)

은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설계 설명과 관계법령에 대한 적법여부 등도 같이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위원 및 발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한다.
2. 제5조제5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타공사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한다.
3. 제5조제6호에 따른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제5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공사 및 제8호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결방법을 따를 수 있다.

- 제14조(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발주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전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5조제4호와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도 및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

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은 이를 전문분야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은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절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는 하지 않는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0조(소위원회 개최)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 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발주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선정된 심의위원에게는 관계서류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제21조(심의사항) 소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사항(설계변경을 포함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라. 구조물 안전 및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마. 공정계획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바.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의 적용과 유지관리의 적정성

사.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아. 해당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자.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제5조제2호에 따른 이의에 관한 사항

가. 원안의 설계와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대한 효과 검토

나.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제5조제3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심의사항

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기간·사업기간의 적정성

나.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다.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라.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공사설명서(시설개요,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설계요구 조건 표현의 명확성과 이중적 해석여부

마.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지
여부와 법적 효력의 유효성

바. 설계·시공·공사관리·설계도서 작성지침 등이 각 개별법령 및 지침·
기준·고시 등의 준수여부

사.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아.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
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자.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발주청 지원사항

차.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카. 그 밖에 설계적격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제5조제5호와 제7호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사항

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해당 공사여건 등에 따른 일괄입찰·대
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등

다.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시공 가
능여부 검토

5.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에 따른 심의사항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원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에게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호 및 제
5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은 관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의견서 내용을 발주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발주청장은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회의개최일 전까지 위원장
에게 제출하고, 회의 때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운영)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의위원은 심의당일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발주청은 심의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은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와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함께 발주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심의결과 조치) ① 제23조제3호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보를 받은 발주청은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영·보완하고, 조치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심의결과 의견서와 함께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기술 심의결과 의견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2절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제2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명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소위원회 개최)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 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일 20일 이전에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③ 소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소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소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및 세부 감점내용과 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⑥ 기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사항) ① 소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안입찰 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2.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여부
3. 기술제안입찰 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4.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②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하되,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 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 바.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발주청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 다. 설계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제28조(제출서류 제한사항) ① 발주청장은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설계도면 및 설명 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7. 투시도, 조감도 제출금지
 8.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금지(MAC작업금지)
 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장은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는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양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 규격, 양면)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2.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4. 제1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청장이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감점기준) ① 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하여야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감점기준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기술검토) ① 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28조의 제출서류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 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제27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시에는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설계검토서 등을 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 보고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설계평가회의 10일 전까지,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및 소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당일 서면으로 제출

②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제3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심의사항의 설명) ①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 당일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시 당해 심의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

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따를 경우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선정 일부부터 심의 일까지 입찰참가업체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

④ 발주청장은 제21조제3호 자목에 따른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들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계평가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설계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심의·의결) ① 소위원회가 제27조제1항제1호의 심의사항 중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 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2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5조(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 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 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한다.

②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 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 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한다.
- ③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 ④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제18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발주청(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준용규정) 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8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7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 반환할 수 있다.

제3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 및 제22조에 따른 설계의 사전 심의수당 : 1안건당 30,000 원 이하
2. 일비 및 여비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금액

제39조(수수료) ①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에는 별표 1의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수수료는 일반심의회와 대안입찰·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및 기타심의로 구분하고, 심의운영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경상북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설되는 설계심의분과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10.12.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별표 1]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제39조제1항 관련)

구 분	심의수수료 산출기준 (1건당)
①조례 제5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따른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	(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수 + 여비
②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심의사항	(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수 + 여비
③조례 제5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참석수당×심의위원수) + 여비
④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 심의에 관한 사항	(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수 + 여비
⑤조례 제5조제6호 중 일괄입찰의 기본 설계 및 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기술검토비×업체수)+{(참석수당+여비)×위원회 개최횟수}] × 심의위원 수
⑥그 밖의 심의사항	사안에 따라 ①~⑤의 규정 적용
<p>- 적용 기준 -</p> <p>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 의 수 당 : 30,000원 2. 참 석 수 당 : 70,000원 3. 초 과 수 당 : 30,000원(2시간 이상 계속회의 시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 가능) 4. 여 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5. 기술검토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사 단가를 설계도서 검토일(1일 4시간)을 감안하여 적용하며, 백단위에서 사사오입한다. <p>※ 입찰참가업체수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일은 다음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2개 업체(6일) * 3개 업체(9일) * 4개 업체(12일) * 5개 업체이상(15일)</p>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9조(소위원회 구성) ①~④ (생략)</p> <p>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제19조(소위원회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25조(소위원회 구성) ①~④ (생략)</p> <p>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제25조(소위원회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도로명의 사용의무) 도지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도로명주소의 홍보) 도지사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 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 산하기관, 도내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도 단위의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법 제22조의2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명주소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전문가, 관련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정의)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를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로 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용자 및 보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주택개량사업 중 가목의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어촌주택개량 용자금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나목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 주택법 제6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자금의 이율과 상환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다목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추가 융자금", 라목 "변소개량융자금", 마목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을 모두 삭제한다.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과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 개축, 이축, 신축을 말한다.</p>	<p>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u>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u></p>
<p>제7조(용자 및 보조) ①~③ (생략)</p> <p>1. (생략)</p> <p>2. 주택개량사업</p> <p>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농촌 주택개량 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u>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u>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 이자납기 : 매분기말일 <p>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 용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u>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u> ◦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p>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 주택개량추가 용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5년거치 5년 <u>균분상환</u> <p>라. 변소개량 용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3년거치 5년 <u>균분상환</u> <p>마. 태양열 이용시설 용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3년거치 5년 <u>균분상환</u> <p>3. 택지조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3년거치 5년 <u>균분상환</u> 	<p>제7조(용자 및 보조) ①~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주택개량사업</p> <p>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어촌주택개량 용자금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른다.</u></p> <p>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 용자금 : 주택법 제62조에 따라 <u>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으로 한다.</u></p> <p>다. <삭제></p> <p>라. <삭제></p> <p>마. <삭제></p> <p>3. <삭제></p>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제6조제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라목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51조와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다목 중 “「지적법」 제2조제4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지적법」 제2조제3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를 “영 제52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77조제1항과 제2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27조(구성) ①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임무 및 운영)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간사 및 서기)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시·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이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0조(비용부담)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회계처리는 「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그 분쟁에 대하여 법 제77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통보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7장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p>
<p>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생략)</p> <p>1. ~ 6. (생략)</p> <p>7. 건축계획 중 법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교통부장관</u>(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한 범위안에서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p> <p>8. ~ 10. (생략)</p>	<p>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p> <p style="text-align: center;">..... 국토해양부장관</p> <p>.....</p> <p>8. ~ 10. (현행과 같음)</p>
<p>제8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①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p> <p>1. 정비구역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p> <p>가. 행정구역·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정비구역의 경계는 도시계획·행정구역·지형·도로·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정비구역경계선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구역 외의 토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p> <p>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 후 주변 지역의 기능회복 및 기능전환을 고려한 적절한 규모로 하고 정비구역의 형태는 정비사업 시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p> <p>라.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른 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나대지 등이 가급적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p> <p>(1)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공원·녹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그 지상의 불량건축물을 철거·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지형여건, 건축물의 배치 또는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영 제13조제</p>	

현 행	개 정 안
<p>1항제4호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은 적절한 배치와 규모가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시설용지의 확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는 확보되었거나 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시설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공간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p> <p>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가용성을 참작하여 적절한 규모 및 배치가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p> <p>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정비사업시행 인가 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p> <p>5. 영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지구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p>	

현 행	개 정 안
<p><u>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되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하여 수립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거환경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현지개량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거나 정비구역여건상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u></p> <p>6. <u>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구역의 임대주택부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를 정하여야 한다.</u></p> <p>② <u>도지사는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u></p> <p>제9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u>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p> <p>1. (생략)</p> <p>2. (생략)</p> <p>가. ~ 다. (생략)</p> <p>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u>건축법</u>」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p> <p>마. (생략)</p>	<p>제9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u>시장·군수</u></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p> <p>..... 「<u>건축법</u>」</p> <p><u>제 60 조</u>.....</p> <p>.....</p> <p>마.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u><신 설></u></p>	<p>제9조의2(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p>제1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7.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는 <u>건설교통부</u>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하고,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할 것 8. (생략) <p>② (생략)</p>	<p>제1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u>국토해양부</u> 8.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p>	<p>제15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p>

현행	개정안
<p>등의 특례) ①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②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51조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 ~ 5. (생략)</p> <p>제18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① (생략)</p> <p>1. (생략)</p> <p>가. ~ 나. (생략)</p> <p>다. 「지적법」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그 해당가액</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19조(현금청산대상) ① (생략)</p> <p>1. ~ 3. (생략)</p> <p>4. 「지적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 공고일 이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p>	<p>등의 특례) ①.....</p> <p>..... 「건축법」</p> <p>제44조.....</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p> <p>...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p> <p>.....</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8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현금청산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p> <p>.....</p> <p>.....</p>

현행	개정안
<p>5. (생략) ② ~ ④ (생략)</p> <p>제21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의 방법과 기준) <u>영 제52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u></p> <p>1. (생략)</p> <p>2. <u>임대사업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u></p> <p>3. <u>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u></p> <p>4. ~ 5. (생략)</p>	<p>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의 방법과 기준) <u>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삭제></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2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생략)</p> <p>1.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p> <p>2. (생략)</p>	<p>제2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현행과 같음)</p> <p>1. 「건축법」 제57조.....</p> <p>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생략) 1. ~ 7.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u>법 제77조제1항과 제2항</u> 규정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77조제1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u></p> <p><u>제27조(구성) ①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u></p> <p><u>③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u>제28조(임무 및 운영)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③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현행	개정안
	<p>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9조(간사 및 서기)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p> <p>②간사는 사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p> <p>제30조(비용부담)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②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p>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회계처리는 「시·</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보칙</u></p> <p><u>제27조</u> (생 략) <u>제28조</u> (생 략) <u>제29조</u> (생 략)</p>	<p><u>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그 분쟁에 대하여 법 제77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통보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u></p> <p><u>제31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보칙</u></p> <p><u>제32조</u> (현행과 같음) <u>제33조</u> (현행과 같음) <u>제34조</u>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시행규칙”을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 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행정기관이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
2.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와 관련한 공용조사 및 공용시험인 경우
3.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경상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p> <p>제2조(수수료) ①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u>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시행규칙</u>”에 따른다.</p> <p>②(생략)</p>	<p>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p> <p>제2조(수수료) ①----- -----“<u>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u>”-----.</p> <p>②(현행과 같음)</p>
<p>제3조(징수방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②(생략)</p>	<p>제3조(징수방법) ①-----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1. 의뢰받은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p> <p>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 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p> <p>②(현행과 같음)</p>
<p>제5조(수수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p>	<p>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행정기관이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 2.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와 관련한 공용조사 및 공용시험인 경우 3.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회·지방의회·교육자치관련 업무

별표 1 중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의 위치란 중 “964-616”을 “468-1”로 하고,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의 위치란 중 “333-1”을 “333-157”로 하며,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풍산분관의 위치란 중 “하리 247”을 “하리리 247-1”로 하고,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의 위치란 중 “118”을 “118-3”으로 한다.

별표 2 중 “경상북도립 군위공공도서관”을 “삼국유사군위도서관”으로 하고,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의 위치란 중 “292”를 “292-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호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기획관리국) 생략</p> <p>1. - 3. (생략)</p> <p>4. 국회·지방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자치관련 업무</p> <p>5. - 18. (생략)</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도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5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도 서 관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td> <td>경북 구미시 원평동 964-616</td> </tr> <tr> <td>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td> <td>경북 안동시 당북동 333-1</td> </tr> <tr> <td>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풍산분관</td> <td>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 247</td> </tr> <tr> <td>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td> <td>경북 상주시 남성동 118</td> </tr> </tbody> </table>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2조제4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도 서 관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경상북도립 군위공공 도서관</td> <td>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72</td> </tr> <tr> <td>경상북도립 점촌공공 도서관가은분관</td> <td>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292</td> </tr> </tbody> </table>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원평동 964-616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당북동 333-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풍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 247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남성동 118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립 군위공공 도서관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72	경상북도립 점촌공공 도서관가은분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292	<p>제8조(기획관리국)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국회·지방의회·교육자치관련 업무</p> <p>5. - 18. (현행과 같음)</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도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5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도 서 관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td> <td>경북 구미시 원평동 468-1</td> </tr> <tr> <td>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td> <td>경북 안동시 당북동 333-157</td> </tr> <tr> <td>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풍산분관</td> <td>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47-1</td> </tr> <tr> <td>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td> <td>경북 상주시 남성동 118-3</td> </tr> </tbody> </table>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2조제4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도 서 관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삼국유사군위도서관</td> <td>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72</td> </tr> <tr> <td>경상북도립 점촌공공 도서관가은분관</td> <td>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292-2</td> </tr> </tbody> </table>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원평동 468-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당북동 333-157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풍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47-1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남성동 118-3	도 서 관 명	위 치	삼국유사군위도서관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72	경상북도립 점촌공공 도서관가은분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292-2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원평동 964-616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당북동 333-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풍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 247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남성동 118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립 군위공공 도서관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72																																
경상북도립 점촌공공 도서관가은분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292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원평동 468-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당북동 333-157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풍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47-1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남성동 118-3																																
도 서 관 명	위 치																																
삼국유사군위도서관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72																																
경상북도립 점촌공공 도서관가은분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292-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868명”을 “4,877명”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 5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경상북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882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14명</u></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u>4,868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p> <p><u>1.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 7명</u></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u>4,875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p> <p><u>1.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 5명</u></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u>4,877명</u></p>

□ 규칙안

-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로 하고, “제출되는 청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출된 청원의 처리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중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를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u>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청원서 보완 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u>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4.(생략)</p> <p>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위원회는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1.~3.(생략)</p>	<p>제1조(목적).....<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u></p> <p>..... <u>제출된 청원의 처리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u>.....</p> <p>제3조(청원서 보완 요구)..... <u>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u> <u>적정한 기간</u>..... </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u>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u>..... 1.~4.(현행과 같음)</p> <p>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u>..... 1.~3.(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로 한다.

제28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록의 작성 기준 및 발간·보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의 제목“(회의록의 배포 및 공개)”를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중 “배포”를 각각 “배부”로 한다.

제5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68조 제1항 중 “예산안”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부”를 “부의”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으로 한다.

제7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도지사”를 각각 “도지사·교육감”으로 한다.

제75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교육감”으로 한다.

제7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7조 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한다.

제81조 제4호 중 “깍연”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한다.

제86조 제1항 제2호 중 “주기가 있는 자”를 “술에 취하여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87조 제4호 중 “깍연 행위”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한다.

제89조 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57조(위원회의 제안)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교육·학예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 등을 제출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제57조(위원회의 제안)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66조(위원회 회의록)①(생략)</p> <p>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p> <p>③(생략)</p>	<p>제66조(위원회 회의록)①(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는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68조(예산안 심의)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p>	<p>제68조(예산안 심의)①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75조(도지사 등의 발언) <u>도지사</u>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75조(도지사 등의 발언) <u>도지사·교육감</u> …………… …………… …………… ……………</p>
<p>제76조(사직)①(생략)</p> <p>②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생략)</p>	<p>제76조(사직)①(현행과 같음)</p> <p>②…………… ……………</p> <p><u>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u></p> <p>③(현행과 같음)</p>
<p>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p>	<p>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법 제79조 ……… …………… …………… …………… …………… …………… ……………</p>
<p>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3.(생략)</p> <p>4. 음식물의 섭취와 <u>꺽연</u></p> <p>5.~ 6.(생략)</p>	<p>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 …………… ……………</p> <p>1.~3.(현행과 같음)</p> <p>4.…………… <u>담배를 피우는 행위</u></p> <p>5.~ 6.(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6조(방청의 제한)①(생략)</p> <p>1.(생략)</p> <p>2.<u>주기가 있는 자</u></p> <p>3.<u>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u></p> <p>4.(생략)</p> <p>②~③(생략)</p>	<p>제86조(방청의 제한)①(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u>술에 취하여 있는 자</u></p> <p><삭제></p> <p>3.(현행 4호와 같음)</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생략)</p> <p>1.~3.(생략)</p> <p>4.음식물의 섭취나 <u>직연 행위</u></p> <p>5.~8.(생략)</p>	<p>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현행과 같음)</p> <p>1.~3.(현행과 같음)</p> <p>4.<u>담배를 피우는 행위</u></p> <p>5.~8.(현행과 같음)</p>
<p>제89조(징계요구와 회부)①의장은 <u>법 제78조에</u>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 또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윤리심사 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p>	<p>제89조(징계요구와 회부)①..... <u>법 제86조</u></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75조</u>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p> <p>④~⑤(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③..... <u>법 제83조</u>.....</p> <p>④~⑤(현행과 같음)</p>

□ 동의안

- (재)문화엑스포 공원부지 및 상징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재)문화엑스포 공원부지 및 상징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 제안사유

- 경상북도가 경주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문화엑스포 공원부지 및 상징건축물에 대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0.6.22로 만료됨에 따라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공원 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무상사용 연장허가 내용
 - 재산목록
 - 토 지 : 경주시 천군동 산 30-14 등 19필지(별첨1 참조)
 - 건축물 :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별첨2 참조)
 - 사용용도 : 문화엑스포 행사 및 상시개장
 - 신청자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사장 김 관 용
 - 허가기간 : 2010. 6. 23 ~ 2013. 6. 22 (3년간)
- 무상사용 허가의 필요성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1998년 이후 5회의 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우수한 문화와 문화산업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를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엑스포문화센터」와 「경주타워」가 건립되어 명실상부한 종합문화테마파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됨에 따라,
- 향후 문화엑스포 행사 개최 및 상시 개장을 위해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부지 및 상징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별첨1>

무상사용 허가대상 공유재산 조서(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사용면적 (㎡)	비고
	시	동	지번			
계					523,328	
1	경주시	천군동	산30-14	목	89,107	도 1/2
2			산30-15	목	73,351	도 1/2
3			산81- 1	임	9,124	도 1/2
4			103	답	301	도 1/2
5			105	임	2,972	도 1/2
6			109	임	826	도 1/2
7			115	대	34,238	도 1/2
8			116	대	10,463	도 1/2
9			121	전	29,630	도 1/2
10			130	전	115,997	도 1/2
11			140-6	전	61,603	도 1/2
12			140-4	전	6,216	도 1/2
13			698	대	6,294	도 1/2
14			750	전	62,449	도 1/2
15			760	답	5,574	도 1/2
16			762	전	7,273	도 1/2
17			128	묘	460	도 1/2
18			108	유	6,988	도 1/2
19			1595-1	도	462	도 1/2

<별첨2>

무상사용 허가대상 공유재산 조서(상징건축물)

구분	소재지	건축물명칭	건물내역	면적(m ²)	비고
건물	합 계			14,028.0	
	경주시 천군동 121, 130, 698, 1595, 1596-1	경주타워	소계	4,016.9	道지분 1/2 경주시 1/2
			1층 로비	1,167.2	
			2층 관망탑	56.0	
			3층 관망탑	56.0	
			4층 관망탑	56.0	
			5층 관망탑	56.0	
			6층 관망탑	56.0	
			7층 관망탑	56.0	
			8층 관망탑	56.0	
			9층 관망탑	56.0	
			10층 관망탑	56.0	
			11층 관망탑	56.0	
			12층 관망탑	56.0	
			13층 관망탑	56.0	
			14층 관망탑	56.0	
			15층 관망탑	56.0	
			16층 전망대	1,171.3	
			17층 전망대	894.4	
		엑스포 문화센터	소계	10,011.1	道지분 1/2 경주시 1/2
	지하1층 기계실연습실		3,772.7		
	1층 공연장, 전시실		4,723.3		
	2층 카페테리아		1,374.2		
	3층 계산실, 복도		140.9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40회 임시회)

2010. 7 인쇄 / 2010.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5

FAX : 602-5140

<비매품>